

의안번호	2203688
의 퇴 인	안상훈 의원
회 답 일	2024. 10. 21.
추 계 번호	24C3571

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체계 마련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,487억원(연평균 897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상급종합병원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체계 마련(안 제22조)	846	871	896	923	951	4,487	897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2조(비용 지원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병원의 의사소통 지원체계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22조(비용 지원)	○	○ 보건복지부의 유사 사업을 참고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병원의 의사소통 지원체제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본 추계서는 202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사업¹⁾을 적용하여 상급종합병원에 수어통역사 및 전담코디네이터 인건비 및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 -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사업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수어통역사 및 전담코디네이터 등을 배치하고 장애인 전용 상담창구를 개설·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
 - － 2025년 5개소를 대상으로 수어통역사 및 전담코디네이터 등 총 3인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, 관련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예산안에 포함됨(국고보조율 50%)
 - －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, 2025년 5개소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17개 전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
 - 2024년 기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47개소 중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된 상급병원(총 10개소)을 제외한 37개소에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
 - －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3년주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2027년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수가 달라질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해당 정보를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계기간 상급종합병원 수가 유지된다고 가정

1)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사업의 내역사업

- 안 제9조의2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는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고 문자통역을 제공하는 등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,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관련 의사소통 지원체계 마련 노력을 기울이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, 본 추계서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만을 고려
 -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계획되었으나(국고보조율 50%), 본 추계서에서는 국비와 지방비를 구분하지 않음
 - (인건비 지원) 지원 인원은 개소당 3명이 유지된다고 가정하고, 인건비 지원 단가는 202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편성된 인건비 단가(인당 월 45.8백만원)를 기준으로 추계기간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²⁾에 따라 변동한다고 가정
 - (운영비 지원) 202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편성된 운영비 단가(월 42.6백만원)가 유지된다고 가정
- 추계결과, 상급종합병원에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체계 마련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4,486억 5,600만원(연평균 897억 3,1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3] 상급종합병원 장애인 의사소통 체계 마련 비용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(단위: 개소, 명,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대상 병원 수(A)	37	37	37	37	37	—	—
인건비 지원 단가(B)	148	153	159	165	172	—	—
지원 인원 수	3	3	3	3	3	—	—
1인당 인건비	49.3	51.2	53.1	55.1	57.2	—	—
운영비 지원 단가(C)	42.6	42.6	42.6	42.6	42.6	—	—
추가재정소요 (A × (B + C) × 12개월)	84,575	87,058	89,624	92,290	95,109	448,656	89,731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2) 2024.10.11. 경제전망 기준
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국회예산정책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(%)	3.6	3.9	3.8	3.8	3.8	3.8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assembly.go.kr